

서울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5나200458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정토회

변 론 종결 2015. 7. 23.

판결 선고 2015. 9. 8.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가합558177 판결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2. 13. 접수

제287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해당 부분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부가한다.

### 2. 부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의 신자인 B의 증여의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가 가까운 장래에 커다란 채무를 부담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은 피고의 신도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B의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동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미리부터 계획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이로 인하여 피고는 별다른 대가 지급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나1의 기재, 제1심의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피고가 종교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기부)받은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춘, 판사 권동주, 판사 황의동

## 목 록

1. 전남 해남군 H 임야 2,377㎡
2. 전남 해남군 I 임야 21,717㎡. 끝.